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29호 2022. 9. 7.(수)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339호(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 간도장소공원】 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1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1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1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1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2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1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14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15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4

회							
람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간도장소공원】결정(최초)을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간도장소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22. 05. 16. 일자로 공고하였으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2. 09. 07.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원개요

공 원 명	시설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간도장공원	소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27-4번지 일원	26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86호 (2012.11.26.)	조성계획 (최초)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2022. 09. 07.(수) ~ 09. 22.(목), 15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032-749-8723)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안) 도서 : 붙임 참조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1. 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69	50	-	-	-	10	
공원 시설	도로 및 광장	소 계	34	34	-	-	-	-	
		도 로	34	34	-	-	-	-	
	휴양시설		16	16	-	-	-	7	
	관리시설		-	-	-	-	-	3	
	녹지 및 기타		219	-	-	-	-	-	
· 시설율 : 18.59% · 건폐율 : 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			선학동 127-4	269	50	-	-	-	-	9	
기반 시설	소계		”	34	34	-	-	-	-	-	
	도로		”	34	34	-	-	-	-	-	
휴양 시설	소계			16	16	-	-	-	-	6	
	쉼터	나	”	16	16	-	-	-	-	-	
	파고라	①	”	-	-	-	-	-	-	1	
	등의자	②	”	-	-	-	-	-	-	5	
관리 시설	소계			-	-	-	-	-	-	3	
	조명시설	③	”	-	-	-	-	-	-	3	
녹지 및 기타			”	219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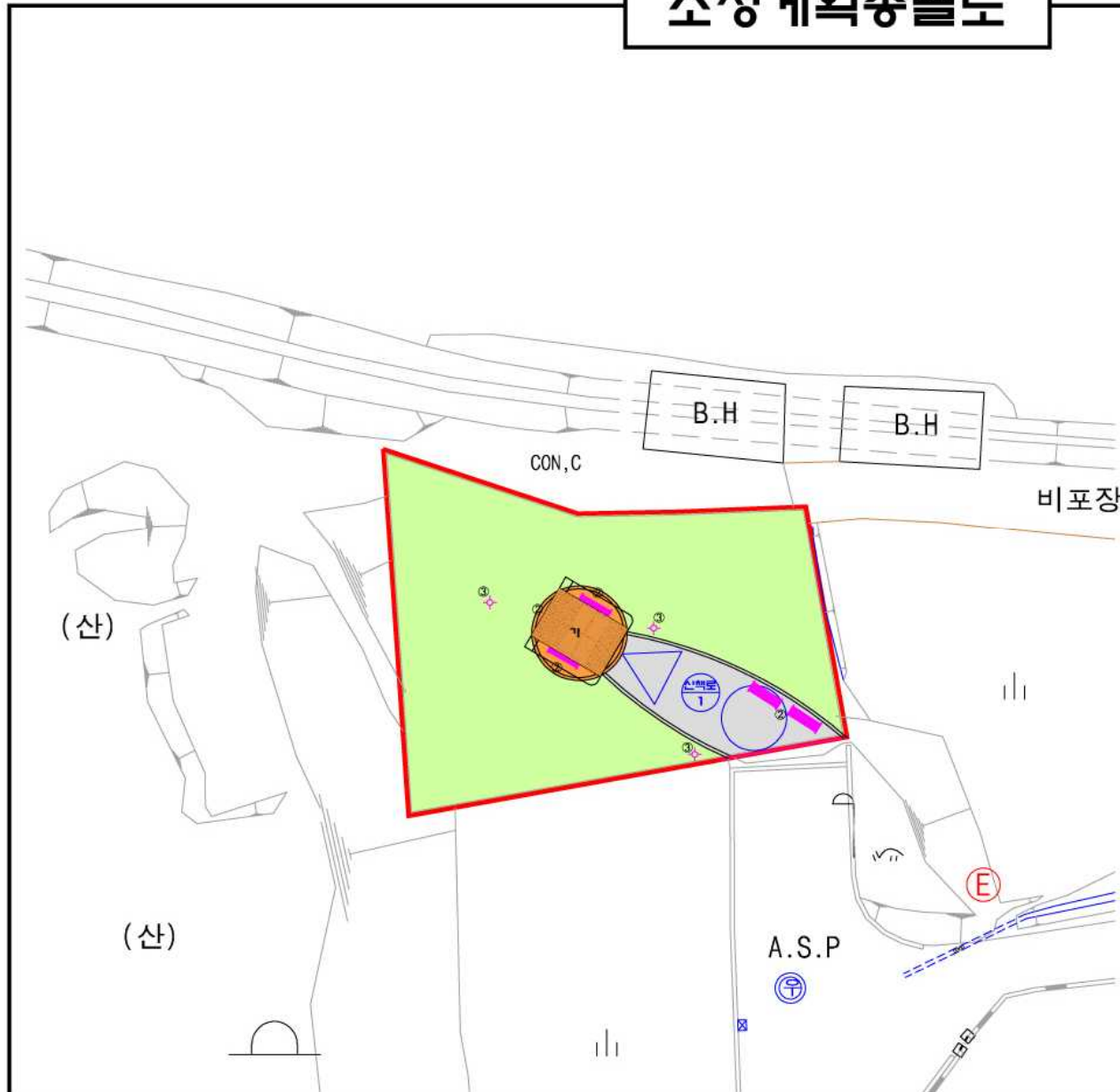
주: 조명시설에 CCTV2개소 포함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계				9	34				
신설	산책로		1	2.3~4.0	9	34	산책로	남측경계	쉼터	

조성계획총괄도

간도장소공원



■ 공원개요

구분	값	비고
소공원면적	269 m ²	
배정시설면적	53.80 m ²	(배지면적의 20.0% 이하)
계획시설면적	50.00 m ²	(배지면적의 18.59%)

■ 시설조서

구분	부호	시설명	시설면적(m ²)	비고
합계			269	100.00%
도면 및 광장	소계	도면	34	12.64%
		도면	34	
휴양시설	소계	기	16	5.95%
		기	16	
		① 피고리	-	
		② 평안지	-	
관람시설	소계	소	-	
		조망시설	-	
복지 및 기차	소계	소	279	81.47%
		복지	279	



0 2m 5m 10m
Scale :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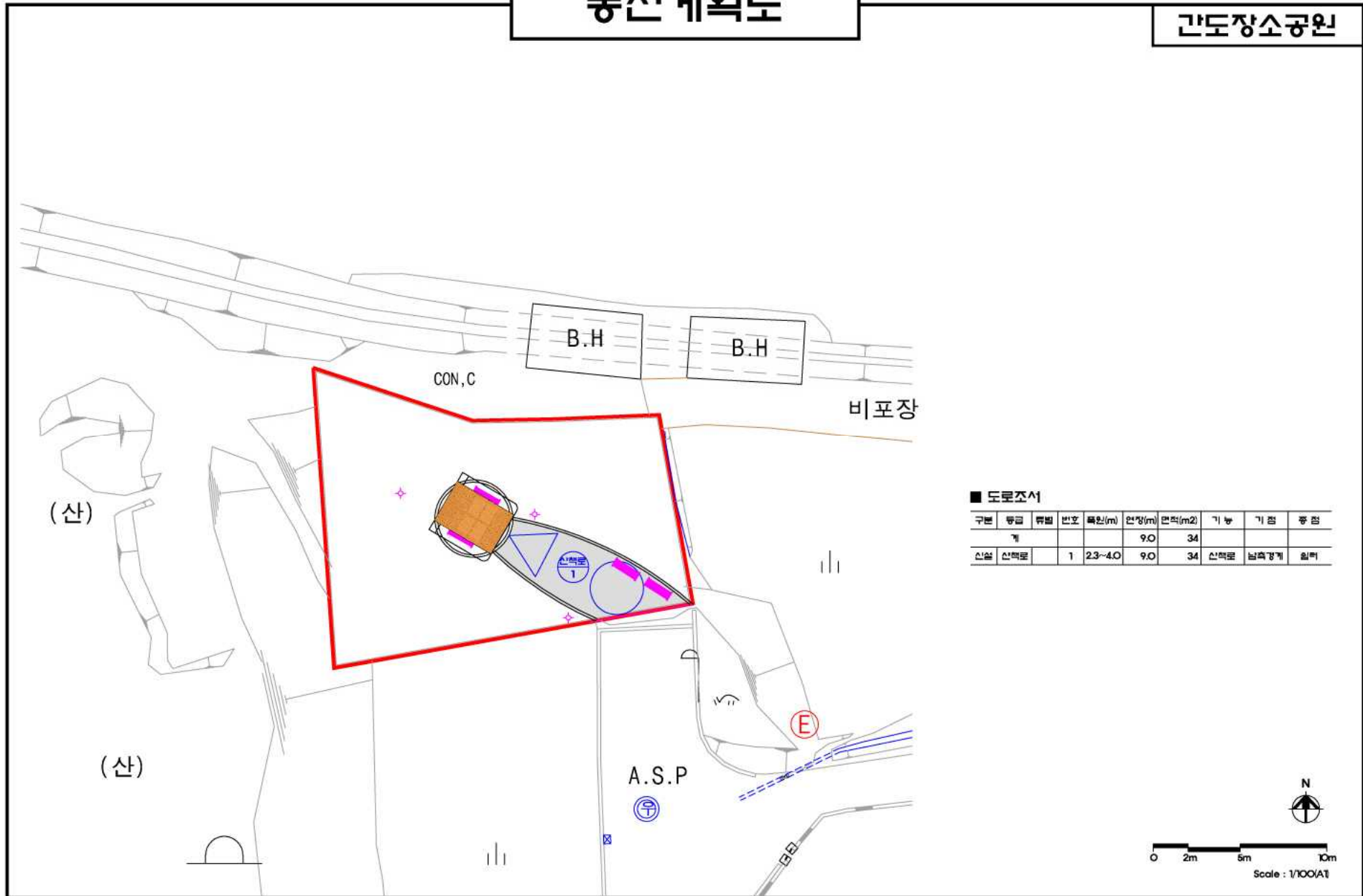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간도장소공원



동선계획도

간도장소공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모자보건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연수구민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제4조)
-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5조)
- 난임시술비 지원 및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규정(안 제6조와 제7조)
- 중복지원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8조와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륜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의학·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제11조에 근거,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 요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가격기준: 체외수정 1회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1회 최대 30만원
한약재 1인 최대 120만원

나. 추계 결과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78,600	978,600	978,600	978,600	978,600	4,893,000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총 비용		1,038,600	1,038,600	1,038,600	1,038,600	1,038,600	5,193,000

다. 상세내역

소요액	산출 내역		산출근거
1,038,600천원	양	인공수정 130명×300천원×1.4회=54,600천원	- '21년 난임시술지원 실인원: 552명 시술별 지원비율(인공:체외≒1:3)
	방	체외수정 420명×1,100천원×2회=924,000천원	
	한	한의약 50명×1,200천원 = 60,000천원	- '21년 한의약 난임지원 실인원: 51명

라. 재원조달방안 : 양방(시비75%, 구비25%), 한방(시비50%, 구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양 방	규모(명)		2,750	550	550	550	550	550
	사 업 비	합계	4,893,000	978,600	978,600	978,600	978,600	978,600
		시비	3,669,750	733,950	733,950	733,950	733,950	733,950
		구비	1,223,250	244,650	244,650	244,650	244,650	244,650
한 방	규모(명)		250	50	50	50	50	50
	사 업 비	합계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시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구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형은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u>
	<u>감지기</u>
<u>3.</u> (생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 2,500천원 (24,200원×2개×50세대)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2,500천원(2023년), 22,100천원(2023~2027년)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재원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구비	2,500	4,900	4,900	4,900	4,9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 작 성 요 령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500	4,900	4,900	4,900	4,900	22,100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등 화재감지기		2,500	4,900	4,900	4,900	4,900	22,1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500	4,900	4,900	4,900	22,100
	지방세		2,500	4,900	4,900	4,900	22,1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기상 변화로 전 세계 인류가 물 부족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물 부족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물 절약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물 절약과 관련한 홍보 및 시책의 시행(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도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물 절약을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8. 17.>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수도법」에 2001. 9. 28.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어 건축물의 신규 및 증·개축시에 절수설비 설치의 의무사항이며,
- 수도설비는 개인의 설치대상으로 비용추계를 생략 함
- 향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필요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저출산 극복과 양육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확대하며
-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감면 확대
 - 기존 100분의 50에서 80으로 확대
- 인용 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5조 제7호, 안22조 제2호)
-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 변경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5조 제10호)
- 감면 대상자 구체화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제13호)
- 65세 이상 노인 운전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5조 제15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주차장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50을 감면”을 “ 80을 감면”으로 한다.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탑승”을

“탑승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
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
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100분의 <u>50</u> 을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 마. (생략)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 ----- ----- ----- ----- ----- - <u>80</u>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

저공해 자동차 (다만,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인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8. · 9. (생략)

10.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100분의 50을 감면

11. · 12. (생략)

13.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태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하는 경우 : 100퍼센트 감면

14. (생략)

<신설>

8. · 9. (현행과 같음)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1. · 12. (현행과 같음)

13. -----
-- 태출한-----

14. (현행과 같음)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u>법 제21</u> <u>조의2제6항</u> 의 규정에 의해 설치 비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 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u>법 제21</u> <u>조의2제7항</u> ----- -----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주차요금 감면율의 확대, 다자녀 기준의 변경,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해당 조문에 대한 추계예측이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 국 환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을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구단체는” 을 “각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 까지” 로,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 을 “의장”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매 연도 12월 25일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당” 을 “12월 31일 까지 해당”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 ① 각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 까지 -- 의 장----- ----- . ----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 획을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한 다.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 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 를 매 연도 12월 25일 까지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 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 12월 31일 까지 해당 -----.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 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 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불필요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일자 변경 및 결과 통지 일자의 구체화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 국 환 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민들이 생활에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연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토론회 운영 원칙(안 제3조)
-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4조)
- 토론회 진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토론회의 결론과 반영을 위한 규정(안 제6조와 제7조)
- 토론회 발표자 및 전문가에 지급하는 실비보상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구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발표회·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토론회 등 개최비용 및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 강사수당 및 원고료
 - 강사료 : 350천원*4회
(※일반1급 2시간 기준/위원회별 연2회)
 - 원고료 : 60천원*4회

- 토론회 개최 기타경비 : 100천원*4회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2,04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2,040	2,040	2,040	2,040	2,04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토론회	횟수		4	4	4	4	4
	사업비	구비	2,040	2,040	2,040	2,040	2,040

4.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

[별지 제1호 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론회 등 개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 주요내용			
불임 :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토론회 등 회의록

일 시		장 소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발언자의 발언 요지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비고	개최사진 첨부		